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5. 5. 18.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5. 5. 18.

라. 상정일자 : 1995. 5. 22.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95. 5. 16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제14647호)이 개정되고, 지방자치단체장(정무직)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개정

나. 주요골자

○ 시와 의회사무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정원을 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함께 관리토록 규정함.

○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정원을 시분청 정원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구청을 별도 정원관리기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함.

○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승인—————1명(지방정무직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95
의 결	95. 5. 30
년 월 일	(제 38 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5. 18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95. 5. 16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 제14647호)이 개정되고, 지방자치단체장(정무직)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 개정

□ 주요골자

- 시와 의회사무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헌정원을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함께 관리토록 규정함
-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정원을 시본청 정원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구청을 별도 정원 관리기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함
-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승인——1명(지방정무직)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각호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 본 청 : 407명

2. 의회사무국 : 23명
3. 직속 기관 : 122명
4. 사 업 소 : 279명
5. 구 청 : 865명
6. 동 : 612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방자치단체장정원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 2 조(정원의총수) (생략)	제 2 조(정원의총수) (현행과 같음)
<u>1. 시 본 청 : 1,271명</u>	<u>1. 시 본 청 : 407명</u>
<u>2. 직속기관 : 122명</u>	<u>2. 의회사무국 : 23명</u>
<u>3. 사 업 소 : 279명</u>	<u>3. 직 속 기 관 : 122명</u>
<u>4. 동 : 612명</u>	<u>4. 사 업 소 : 279명</u>
	<u>5. 구 청 : 865명</u>
	<u>6. 동 : 612명</u>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(2차)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4. 12.
- 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5. 4. 12.
- 라. 상정일자 : 1995. 5. 22.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공유재산 취득

- 1)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야외학습장 부지 매입